

**브라질연방공화국 농업축산부(MAPA),**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연구소(IBAMA)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RDA)**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RDA”)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농업축산부(이하 “MAPA”), 브라질 위생감시청(이하 “ANVISA”),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청(이하 “IBAMA”)는(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

당사자들 간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의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통 관심 분야에서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의 등록, 평가 및 관리에 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I. 목적**

본 양해각서(“MoU”)의 목적은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의 등록, 평가 및 관리 분야에서 당사자들 간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수립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

## II. 협력 분야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1. 정보 교류

- a. 농업환경, 병해충 방제(예: 침입 외래종), 화학농약, 생물농자재(Bioinput) 및 관련 분야 등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
- b. 화학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에 대한 규제제도, 등록 절차 및 평가 과정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c. 이화학적 특성, 약효 및 약해, 인체독성, 환경 생물 및 생태계 영향,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의 사용 등 분야에서의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d.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의 등록, 사용 및 관리 정보와 더불어 안전성 및 위해성평가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e.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 등록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농약 및 생물농자재(Bioinput) 등록 목적상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적 대화 촉진

### 2. 인적자원 교류

- a. 당사자 소속 전문가 간 상호 방문, 초청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 b. 단기 및 장기 연수생과 전문가의 파견 및 초청

c.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전문가 교류 및 지식 공유

3. 공동 활동

a. 공동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및 학술회의의 개최

b.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과제 수행

### III. 정보 교류 및 비밀유지

1. 본 양해각서는 그 범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적절한 비밀로 취급하고,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3.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교환·수령·제공되는 문서, 정보 및 기타 모든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며,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공동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5.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에 교환된 비밀정보에 대해 제3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입법 또는 사법적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또한 그러한 입법 또는 사법적 결정으로 인해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이

전에 지체 없이 공개 당사자에게 그 요구사항을 통지하여, 공개 당사자가 공개에 대해 다룰 기회를 갖거나 또는 공개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6.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관련 법령,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통지한다.
7.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이미 공유된 비밀정보는 동의 없는 공개로부터 계속 보호되며, 본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됨을 이해한다.
8. 다음 사항은 본 양해각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하지 않는다.
  - a. 의료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
  - b. 어떠한 비밀유지계약의 틀 내에서 제3자가 제공한 비밀정보.

#### IV. 이행

1.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조정한다.
2. 본 양해각서는 양국의 각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당사자들의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가능 여부를 전제로 한다.
3.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재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V. 회의 및 협의

1. 당사자들은 진행 중인 협력을 검토하고, 추진 현황을 평가하며, 향후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또는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해당 회의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한다.

## VI. 지식재산권

1. 공동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 협력사업(프로젝트)별로 당사자들이 별도로 체결하는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2. 당사자들은 공동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각국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보전한다. 또한 본 협력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지식재산의 창출, 소유,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각 개별 협력사업(프로젝트)별로 당사자들이 별도로 체결하는 합의서를 통해 정한다.
3.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 규제자료(confidential regulatory data)로 보호되는 데이터·정보·문서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상대 당사자가 등록 목적으로 제공·공유·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VII. 비구속적 성격

1. 본 양해각서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들 간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협력 의사를 표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협력 또는 약정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 비밀정보를 공유해야 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각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 VIII. 연락 담당자

본 양해각서의 관리를 담당하는 연락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a) 한국 측: RDA, 국제기술협력과장(Director)(kimmk72@korea.kr)

b) 브라질 측:

- MAPA: 농약 총괄조정관(General Coordinator of Pesticides)  
(jose.torres@agro.gov.br, atendimento.cgaa@agro.gov.br);

- ANVISA: 국제협력국장(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rel@anvisa.gov.br);

- IBAMA: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총괄조정관(General Coordinator of Evaluation and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cgasq.sede@ibama.gov.br).

## **IX. 재정 조치**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의 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지출을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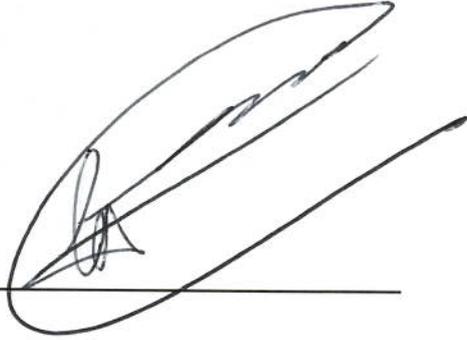
## **X. 분쟁 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XI. 유효기간, 개정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본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 당사자의 대표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추가로 5년간 자동 갱신된다.
3.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개정도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어느 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5.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개시된 진행 중인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26년 2월 23일, 포르투갈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원본 6부에 서명하며, 각 문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양해각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브라질연방공화국  
농업축산부(MAPA)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다 파바로  
농업축산부 장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RDA)

이승돈 박사  
농촌진흥청 청장



브라질연방공화국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레안드루 피네이루 사파트리  
브라질 위생감시청장

Documento assinado digitalmente  
**gov.br** RODRIGO ANTONIO DE AGOSTINHO MENDONC.  
Data: 19/02/2026 14:42:23-0300  
Verifique em <https://validar.it.gov.br>

브라질연방공화국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청(IBAMA)

호드리구 아고스치뉴  
브라질 환경재생가능천연자원청장